
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호	9795
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29.

발의자 : 서형수 · 박재호 · 신창현
 강병원 · 한정애 · 김해영
 이정미 · 이용득 · 신용현
 전재수 · 박홍근 · 최인호
 송옥주 · 박정 · 민홍철
 권미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정의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원배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환경 피해의 차별방지 및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. 현행 헌법상 환경권, 평등권, 적법절차원칙,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국토 및 토지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해 종합적으로 유추해 볼 때 다른 기본 원리와 같이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법률상 환경영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범적 효력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실정임. 이에 「환경정책기본법」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「국토기본법」에 환경영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·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79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개발과”를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조에서 정한 환경정의의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개발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국토관리의 기본 이념) 국 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 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 이므로,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<u>개발과</u>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 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 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 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· 집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국토관리의 기본 이념) --- ----- ----- ----- ---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조 에서 정한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을 존중하여 <u>개발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